

## 청년공간 종사자 자격기준(안)

유 형		자 격 기 준
광 역 센 터	센 터 장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자 ③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공인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부 장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자 ③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공인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④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광 역 센 터	팀 장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고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고거나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청 년 센 터	선 임 매 니 저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고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고거나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관 여 센 터	주 임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고거나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 청년·청소년 포함, 상담, 교육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22년 서울 청년공간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준용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청년시설(센터)에서 근무한 경력</li> <li>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li> <li>*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li> <li>→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li> </ul> </li> <li>3. 조건부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li> <li>*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li> </ul> </li> <li>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li> </ul> </li> <li>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li> <li>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li> <li>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li> </ol>
8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li> </ul> </li> <li>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li> <li>※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li> </ul> </li> <li>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li> <li>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근무경력 등)</li> </ol>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9.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 14-1.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14-2.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7.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0.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23.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24.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2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위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26.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80%

- 2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2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30.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31.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 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3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3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34.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li> <li>2.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36”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li> <li>3.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하며 “「병역법」 제 5조 제1항 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lt;복지정책과-8567(2017.4.19.)&gt;</li> </ol>
-------	---